

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15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업체	명칭		
	소재지	전화번호	
임원	성명	직책	생년월일

시험의 종류
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2.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3.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4.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5.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5 제6호에 따른 금액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)	

유의사항

-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,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,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,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- 임원란은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하고,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서 첨부합니다.
- 시험의 종류는 비파괴시험의 종류와 총수시험, 수압시험, 기밀시험 등 보유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로 실시가능한 시험의 종류를 적습니다.

